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1. 19 선고 2020가합4098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훈

피 고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법

담당변호사 조준현, 김팽찬

변 론 종 결 2021. 10. 1.

판 결 선 고 2021. 11. 19.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3/11 지분에 관하여, 원고 C, B, D에게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3/11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 D에게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3/11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 D에게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각 2007. 2. 10.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은 2001. 7. 19. 사망하였고, 망 F의 재산은 그 배우자인 원고 A가 3/11, 자녀들인 G(개명전: H), 원고 B, C, D이 각 2/11 지분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피고는 위 G의 남편이다.

나. 피고는 1986. 6. 10. 망 F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1987. 2. 10.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통틀어 ‘피고 명의의 각 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망 F은 보증채무 등의 문제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의 각 등기를 마쳤으나 위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피고 명의의 각 등기는 모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이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망 F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각 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선택적으로, 망 F은 1987. 2. 10. 이 사건 건물이 완공한 때로부터 2001. 7. 19.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고, 망 F의 사망 이후 원고들이 망 F의 뒤를 이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원고들의 점유취득시효는 망 F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1987. 2. 10.부터 20년이 경과한 2007. 2. 10.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상속분에 관하여 각 2007. 2. 10.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망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피고의 자금과 노력으로 위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일 뿐, 망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망 F이나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 방실을 망 F 및 원고 A에게 무상으로 대여해 준 것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일부 방실을 점유한 것으로 이러한 망 F 및 원고들의 점유는 그 점유의 객관적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판단

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9, 11, 12, 1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 F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1986. 6. 17. 망 F과 ‘1. 양도자(망 F)는 이 사건 토지를 1986. 6. 10.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이를 양도자인 망 F이 지정하는 자에게 하시라도 양도할 것을 명할시 피고(양수자)는 이를 지체할 수 없고 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갖추어 주기로 서약한다. 2. 피고는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방해행위를 일체 할 수 없음을 쌍방간에 명백히 한다.’라는 내용의 양도양수각서(갑 제5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와 망 F은 대외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대내적으로 여전히 망 F에게 그 소유권이 있음을 명확하게 하려고 위 양도양수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필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러한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데(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453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망 F이 사망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양도양수각서 및 등기권리증 등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

③ 원고들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중 피고의 인감증명서는 모두 피고가 직접 망 F이 생존하고 있던 1995. 11. 8. 및 망 F이 사망한 이후인 2003. 4. 2. 발급받은 것(갑 제5호증의 3, 7)이고, 이와 함께 피고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갑 제5호증의 2, 6), 매매예약계약서(갑 제5호증의 5), 토지거래계약허가·신고신청서(갑 제5호증의 4) 등 서류를 원고들이 보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망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수탁받았음을 인정하고 이를 망 F 내지 원고들에게 건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망 F과 피고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이 정한 유예기간(같은 법 시행일인 1995. 7. 1.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무효가 되고,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 또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 F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망 F의 상속인인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11 지분에 관하여, 망 F의 상속인인 원고 B, C, 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양도양수각서(갑 제5호증의 1)에 대하여 백지로 된 서면에 어떤 내용으로 작성될 것인지 알지 못한 채 망 F의 요구에 따라 피고의 자필로 서명하고 그 옆에 날인만 하였다고 주장한다.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양도양수각서에 피고가 자필로 서명하고, 피고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양도양수각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양수각서가 백지에 피고의 자필서명, 날인을 먼저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1996. 3.경 필리핀으로 이주하면서 사무실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등기권리증을 원고들이 절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 A가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 등의 서류 중에는 피고가 필리핀으로 이주한 이후인 2003. 4. 2. 피고 본인이 발급한 피고의 인감증명서(갑 제5호증의 7)와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2000년대 양식의 위임장(갑 제5호증의 6)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피고가 절취당했다고 주장하는 등기권리증과 달리, 원고들이 등기권리증과 함께 소지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관한 서류로 보이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신고신청서와 매매예약계약서에 관하여는 피고가 망 F에게 건네준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2020. 10. 30.자 답변서 5, 6면), ③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증 등에 대한 분실이나 도난 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들이 보관하고 있는 각 등기권리증과 토지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에 각각 다른 날짜로 된 3개의 접수인이 찍혀 있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망 F과 피고 사이에 위 등기권리증 등을 3차례나 서로 주고받았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망 F과 피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망 F이 피고에게 3차례에 걸쳐 등기권리증을 교부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한 후 다시 피고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보관한 것이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등기권리증을 원고들이 절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등기권리증의 매도증서(갑 제4호증의 1)에 망 F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 5,222,58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망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매도증서 이외에 피고가 망 F에게 매매대금 5,222,58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거래 등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피고가 망 F의 사위로서 밀접한 관계인 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직후 피고가 망 F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각서를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금원의 교부 없이 위와 같은 내용의 매도증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단지 위 매도증서만으로는 피고가 망 F에게 실제로 위와 같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판단

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동산등기는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등 참조).

2) 갑 제5,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망 F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처분문서인 이 사건 양도양수각서에는 ‘경기도 광주군 I 소재 대지 175평(579㎡)’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별다른 기재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양도양수각서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없다.

② 망 F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양도양수각서와 피고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것과는 달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7. 2. 10.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후부터 망 F이 2001. 7. 19. 사망하기 전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된 것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지 않았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공사비 1억 2,500만 원 중 피고가 약 5,00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된 후 이를 임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약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원고들은, 망 F이 월세를 받는 등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약 7,500만 원과 피고로부터 차용한 약 5,000만 원을 합한 공사비 1억 2,500만 원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망 F이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7,5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망 F은 채권자들로부터 다액의 보증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그 당시 망 F이 약 7,500만 원이라는 금원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다는 점은 망 F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망 F으로부터 피고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인 반면,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자금과 노력을 들여 신축함으로써 원시취득한 것인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등기권리증 이외에 이 사건 양수양수각서 등 망 F의 소유권을 인정할 만한 서류가 함께 보관되어 있는 것과 달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망 F의 소유권을 인정할 만한 처분문서 등이 전혀 없는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⑥ 원고 A가 2001. 6.경부터 2018. 6.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기간은 피고가 필리핀에 체류하던 기간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직접 체결하거나 그 배우자인 G가 피고를 대리하여 체결한 점, 피고가 필리핀에서 돌아온 이후로는 원고 A의 계좌로 임대료가 입금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원고 A가 일정기간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임대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부인하기 어렵다[원고들은 원고 A가 이 사건 건물 신축 이후부터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며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A가 2001.경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⑦ 원고들과 피고가 가족관계인 점에 비추어 보면, 단지 이 사건 건물 신축 이후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서 거주 또는 영업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건물 인근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부인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망 F이나 원고들이 진정한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F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망 F과 그로부터 점유를 승계받은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1987. 2. 10. 점유를 개시할 당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피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망 F과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신축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서 거주하거나 상가로 이용하면서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30여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전등기를 요구하거나 이를 시도하지 않았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약 1억여원의 취득세 등을 부담하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이전등기를 경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수증(갑 제17호증)의 기재와 원고 C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이 2021. 7. 6. 불상자로부터 매매에 따른 취득세 등 공과금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 영수증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알아보았다거나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시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

②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대출받을 때에도 망 F이나 원고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신축 직후부터 3차례에

걸쳐 피고 또는 그 배우자인 G를 채무자로 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그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도 원고들이 아닌 피고가 직접 체결하거나 그 배우자인 G가 피고를 대리하여 체결하여 왔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역시 원고들이 아닌 피고가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앞으로 나온 세금을 원고들이 모두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피고가 필리핀에서 돌아온 이후로는 원고 A의 계좌로 임대료가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3) 따라서 망 F과 그로부터 점유를 승계받은 원고들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진숙, 판사 권슬기, 판사 김웅수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경기도 광주시 대 579㎡제2. 경기도 광주시 [도로명주소] 경기도 광주시

위 지상

적벽돌조슬래브지붕2층주택

1층 99.54㎡

2층 99.54㎡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3층

대중음식점및소매점다방

사무소당구장

1층 172.26㎡

내역 소매점 146.16㎡

계단및변소 26.10㎡

2층 172.26㎡

내역 다방 109.62㎡

사무소 36.54㎡

계단및변소 26.10㎡

3층 180.84㎡

내역 사무소 36.54㎡

당구장 109.62㎡

계단및변소 34.68㎡

지층 200.97㎡

내역 대중음식점 146.16㎡

계단및변소 26.10㎡

보일러실및창고 28.71㎡

